

2013년도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 시행계획 공고

『2013년도 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이전기술과제』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6월 28일
중소기업청장

1. 지원개요

□ 사업개요

-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상용화·사업화에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

□ 지원규모 : 86억원

□ 지원조건

-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%이내에서 지원하고, 민간부담 현금은 총사업비의 20% 이상을 원칙으로 함

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	총사업비			신청방식
	정부 출연금	민간부담금		
		현금 (보증연계 또는 자부담)	현물	
최대 2년, 6억원	60%이내	20%이상	20%이내	지정공모

○ 민간부담금 중 현금 조달방법

-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에 대해 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)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(단,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)
- 보증연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보증기관의 기술보증을 통해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지급
-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, 보증기관에서 현장조사 시 별도의 R&D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증가능성 및 보증한도를 결정

* 보증연계를 신청한 기업은 사업신청 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가능

○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(고정기술료, 경상기술료의 선불금 등)은 동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- 단, 기술보증기금과 협의·심사 후 기술이전 보증지원을 통해 조달 가능

2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-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(2개 기관)을 구성하여 신청
- **(주관기관)*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
- **(공동개발기관)**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,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연구기관, 대학 등

<이전기술과제의 공동개발기관 자격요건>

- 국·공립연구기관
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그 밖에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·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 · 확인

- (서면·대면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
- (현장조사)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
 - *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>

구 분	확인 근거 (증빙서류)
설립년월일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▪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년월 일로부터 업력 산정
상시 근로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* 상시근로자 :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 ·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·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,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R&D 투자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&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
기본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▪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rndgate.ntis.go.kr) 조회 등

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- ※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,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
- 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13년 6월 28(금) ~ 7월 31(수),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

※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 ※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자료마당 → 사업규정자료 → 2013년이후 자료실 → 중소기업융·복합기술개발사업(신청)

□ 온라인 신청절차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 및 완료
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	사업계획서 [별지 제1-①] Part II	

<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 · 접수요령 >

- ① 1단계 : 회원가입
 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
- ② 2단계 : 온라인 직접입력
 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
- 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
 - [별지 제1-①호]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 · 업로드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
 - [별지 제1-② ~ ⑨호]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
- 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
 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 · 접수 완료 확인)
 - ☞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

○ 신청서 구비서류

연번	서식 명	제출방법	해당여부
①	응·복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-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(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) -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- 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-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(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)	* 인터넷(SMTECH)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, 문서파일 업로드	공 통
②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	
③	응·복합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
④	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		
⑤	보증연계용 R&D경제성평가 신청서		
⑥	연구시설·장비 구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		해당시
⑦	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 *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인 경우 작성		
⑧	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	
⑨	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		

4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※ 아래 명시된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서면평가 (8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, 유사·중복성,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□ 현장조사 (8~9월)

-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(주관 및 공동)의 신청자격, 기술개발능력, 사업화능력, 과제 중복성,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

-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R&D경제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를 평가

□ 대면평가 (10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, 사업 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,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 (11월)

-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예산규모,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선정

$$\text{종합평점} = \text{대면평가 점수} + \text{우대배점} - \text{감점}$$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12월)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

5. 기술료 납부

-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“성공” 또는 “성실수행”으로 판정될 경우,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
*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(1~2년이내)시에는 20~40%까지 감면

6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□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- 신청기관(주관 및 공동)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사업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

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*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□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·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㉔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인 경우

㉕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- *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
㉖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(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)

㉗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과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

○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7. 기타 공지사항

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

사업명	내역사업명	세부과제명
중소기업 융·복합기술개발사업	융·복합기술개발	산연협력과제 이전기술과제
	센터연계형기술개발	센터연계형과제

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)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

- * 단,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, 'R&D 기획역량 제고' 및 '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'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

□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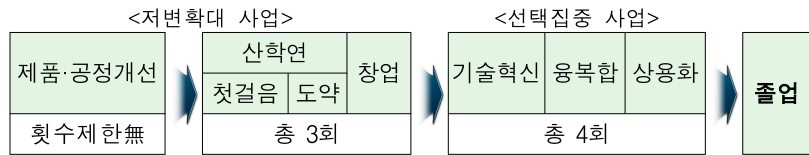
㉘ 2013년 적용기준

○ '13년의 경우는 '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(공동개발기관 포함)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

- *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: -1점
-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: -2점

㉔ 2014년부터 적용기준 :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

-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 (산학연사업에 해당)의 자격으로 참여하여,
 -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,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
 - * 연도별 “저변확대” 및 “선택집중” 사업 현황 : <붙임3> 참조
- '05년 이후 '선택집중'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'저변확대' 사업에 참여 불가



- 그 외 적용기준
 - 제품·공정개선사업은 '저변확대'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 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
 - '05년부터 '저변확대'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'선택집중'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
 - '산학연협력기술개발'사업 참여기업은 '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과제책임자 등)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-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,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
-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 시스템(SMTECH)에 등록(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)

□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·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○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서는 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」에서 도입의 타당성, 활용성,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

※ 연구시설·장비라 함은 연구·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, 시험, 계측, 기계가공, 제조, 전처리, 영상, 교정, 데이터 처리,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

※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·장비는 연구시설·장비로 산정불가하며,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

□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대표자(경영실권자 포함)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

- 부도, 휴·폐업, 신용관리정보대상, 파산,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
-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·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·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
-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(배우자 포함)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
- 직원 임금, 임차료,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
-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유보기업 포함),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(연대보증인 포함)인 경우
-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

* 상세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<http://www.kibo.or.kr/src/guarantee/kba110.asp>) 참조

□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각 세부사업별 「융·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을 적용함

8. 문의처

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화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중소기업 R&D고객센터)	신청·접수, 사업계획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1661-1357(내선 2번)
보증기관	기술보증기금	현장조사, R&D경제성평가	032-830-5719

지방중소기업청(관리기관)

기관명	전화	주소
서울지방중소기업청	02-509-6778	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
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	051-601-5152	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	053-659-2289	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
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	062-360-9158	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
경기지방중소기업청	031-201-6978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
인천지방중소기업청	032-450-1156	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
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	042-865-6135	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
강원지방중소기업청	033-260-1631	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
충북지방중소기업청	043-230-5333	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-1
전북지방중소기업청	063-210-6442	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-5
경남지방중소기업청	055-268-2558	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
제주특별자치도(기업지원과)	064-710-2638	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

※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: <http://www.tipa.or.kr>